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0. 13 선고 2021가단1188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

담당변호사 강경철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9. 29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3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1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. 10. 13. 접수 제995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 정성중

별지